# 2023년 남하면 종합감사 결과보고

##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3. 11. 13. ~ 11. 16.(4일)

○ 감사범위 : 2020. 11월. ~ 감사일 현재

○ 감사인원 : 감사담당주사 등 7명

○ 감사중점사항

- 예산, 회계(계약, 물품관리), 농정, 세정, 복지분야 적정 처리 여부
- 시설공사 집행(관리) 적정성 및 준공 시설물의 사후관리 실태
- 민원 사무처리 적정 여부, 종전 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 등

## Ⅱ 감사결과

| 구분 | 행정상(건) | | | 재정상(천원) | | | | 신분상 | | | |
|---|---|---|---|---|---|---|---|---|---|---|---|
| | 계 | 시정 | 주의 | 계 | 환수 | 부과 | 추징 | 계 | 주의 | 경징계 | 중징계 |
| 계 | 32 | 12 | 20 | 12,322 | 8,672 | - | 3,650 | 1 | 1 | - | - |
| 감사결과 처분요구 | 22 | 10 | 12 | 12,322 | 8,672 | - | 3,650 | 1 | 1 | - | - |
| 현지 조치요구 | 10 | 2 | 8 | - | - | - | - | - | - | - | - |

# Ⅲ 주요 지적사항 요약

## 1 회계 · 계약분야

###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물품구매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등

**가. 상품권, 특산품 등 물품구매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등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그 대상자 및 내역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상품권, 특산품 등 총 13건, 4124천원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화환·화분·기념품 등 제공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화환·화분·기념품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유관기관의 장의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이거나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민간단체 체육·단합대회 또는 행사 개최에 따른 축하 명목 등으로 대상이 아닌 자 등에게 총 9건, 820천원의 화분·화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하되,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최소 분기마다 공개(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51건, 7,627천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짧게는 4일, 길게는 124일까지 기한을 초과하여 공개(군 홈페이지 게시)한 사실이 있음.

### 2) 법인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 미준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후(3일이 지난 후) 품의 결재 승인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 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회계절차를 위반하는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 사전 품의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후 품의 결재 승인을 받는 등 법인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를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3) 시설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단일공사(통합발주)임에도 불구, 공사량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 「지방계약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 남하면 ○○리 ★★마을 일원에 2건의 세천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업 시기와 공종(사석쌓기, 포장 등)이 동일하고 공사현장의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는 등 단일공사로서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하여 2인 이상의 경쟁입찰(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으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4) 물품(관급자재)구매 계약서 작성 미흡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납품일자, 계약보증기간, 기명날인 등) 누락

○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인 재무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여야 하나,

○ 2건의 물품(관급자재)에 대해 수기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일자, 계약보증기간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작성명의인에 계약담당자(재무관)의 기명날인을 누락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절하게 작성·체결한 사실이 있음.

## 2 건설공사분야

### 1) 전기공사 분리발주 부적정

대사경로당 환경개선공사,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닌 전기공사는 전문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부실 시공 방지 및 시공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대사경로당 환경개선공사' 등의 사업을 발주하면서, 사업 내용에 포함된 전기공사를 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하고, 본 공사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2)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준공정산 부적정

목적 외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2,225천원 과다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정산을 할 때에는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실적 서류를 검토·확인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를 하여야 하고 간접공사비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나,

○ '말랑들 농경지 진입로 정비공사' 등 4건에 대하여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실적을 도급자가 제출하였음에도, 안전관리비 2,225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3)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시행

'가천저수지 진입로 정비공사' 등 679건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시행

○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사업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최종 하자검사 조서와 함께 결과를 제출받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처리가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 '가천저수지 진입로 정비공사' 등 679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4)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 공사비 4,594천원 과다 지급

○ '대촌마을 승강장 뒤 사면 정비공사' 등 7건에 대하여 설계내역서에 따른 현장 소운반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준공 처리하여 공사비 4,594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3 세무분야

### 1) 태양광발전시설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 누락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

○ 「지방세법」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지 않아 취득세 2,960천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적정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법인에 대한 재산세 690천원 부적정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농업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영농조합법인 등 2개의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업법인에 대하여 재산세 690천원을 부적정하게 감면한 사실이 있음.

## 4 복지분야

###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급여관리자 미지정, 본인관리 확인서 미징구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소홀

○ 기초생활수급자 중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급여관리(사용) 실태를 주기별로 점검하되,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 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타인의 급여 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징구 및 반기별 급여사용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신규 책정된 발달·정신장애인 등 4명에 대해 급여관리자 미지정 및 사회보장정보(행복e음) 시스템에 미등록하였고, 본인이 수급비를 직접 관리하는 자에 대해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징구하지 아니하였음.

○ 또한, ◎◎◎ 등 2가구의 현금지출 및 계좌이체 건에 대해 지출내역서와 사용처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 장애인등록증 회수·폐기 업무 소홀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 미송달 및 미회수 사용 시스템 미등록

○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장애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반환통보서를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 등에게 송달하여야 함에도,

○ 사망 등으로 장애인등록증이 말소된 ☆☆☆ 등 11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거나, 미회수 사유를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3) 등록장애인 재판정 관리 업무 소홀

재판정 예정자(경과자)에 대한 재판정 기한 미안내(재판정 촉구 미통지)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재진단(판정)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장애진단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촉구서를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함에도,

○ ◇◇◇ 등 3명의 재판정 예정자(경과자)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재판정 기한 및 재판정 촉구 안내(통지)하지 않는 등 장애인 등록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4)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 정산검사 소홀

대촌경로당 등 23개소,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대촌경로당 등 23개소의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정산 검사하면서 부적정 지출 6건, 증빙서류 미비 21건, 구입물품 확인불가 3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5)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소홀

통합사례관리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 사후 모니터링 미이행

○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대상 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종결 후 9개월 내 2회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통합사례관리 종결자인 □□□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가 종결되었음에도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이행하지 않는 등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5 농업분야

### 1)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업무 소홀

유사한 복지서비스(문화누리카드) 중복 신청 미확인

○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르면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는 대상자 선정 시 제외토록 규정하면서 문화누리카드 선정자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 대상자 신청 접수 시 문화누리카드 등과 중복 지원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화누리카드 지원자와 중복되는 신청자 명단을 군에 제출하여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가 부적정하게 지원되게 한 사실이 있음.

## 6 기타분야

### 1) 당직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과오 지급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539천원) 과오 지급

○ 재택당직근무 시 초과근무를 한 당직근무자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당직근무시간과 초과근무 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되는 시간만큼 제외하고 초과근무 시간을 정산하여야 하나,

○ 초과근무 수당 정산 시 당직근무 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에 포함시켜 정산하여 초과근무수당 539천원(42건)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음.

### 2) 이장 명부관리 소홀

이장 임명 시 개발위원회 추천서 및 추천자 이력서 미접수(명부관리 無)

○ 「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마을총회에 선출된 사람을 행정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고, 그 추천된 사람의 이력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함에도,

○ 남하면에서는 2020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4명의 이장을 임명하면서 개발위원회 추천서 및 이력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3) 비밀문서 관리 소홀

미파기 비밀문서 3건, 파기확인자 날인 누락 15 등 비밀문서 관리 소홀

○ 「보안업무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비밀문서를 취급하여야 하며, 비밀사본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파기자, 파기확인자를 명시하고, 비밀열람기록전에서 비밀을 분리하여 파기자, 파기확인자 등을 기재한 후 보관하여야 함에도,

○ 미파기 비밀문서 3건, 파기확인자 날인 누락 15건 등 비밀문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4) 기간제근로자 고용 · 산재보험 미가입

2021년 측량기준점 조사 등 2개 사업장, 기간제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에도,

○ 2021년 측량기준점 조사 등 2개의 사업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5) 민방위대 교육훈련 대상자 면제처리 부적정

내부결재 없이 담당자 직권 또는 증명서류 미비에도 교육훈련 면제처리

○「민방위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한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민방위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 2건에 대해 내부결재 없이 담당자 직권 또는 신청서와 증명서류가 미비함에도 면제처리를 한 사실이 있음.

### 6)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 소홀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접수) 시 발급대장, 위임장, 신분증 등 누락

○「인감증명법」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받은 위임장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 접수한 19건에 대하여 대리인 신분증 누락, 발급대장 미작성 등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